

항만운송 관련 주요 질의·회신

#. 대표자 변경 시 상호 변경이 없다면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

질 의 요 지	회 신 내 용
<p>(‘12. 10. 9, 제주특별자치도)</p> <p>○ 개인사업체의 상호 변경이 없다면 대표자변경을 인정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)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(동 사업체는 부두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급수선을 확보하지 않고 시설기준 등의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받고 있음)</p>	<p>(‘12. 10. 26, 항만운영과-3159)</p> <p>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4(권리·의무의 승계)에 의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포괄적 양도를 하는 때에 대표자변경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변경발급이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의무 승계자임이 인정된 경우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을 변경 교부하여야 할 것임</p>